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과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정한 용어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나. 장학금의 지급에 따른 자격기준 및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9조제1항)
- 다. 장학생의 의무를 장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함
(안 제10조)

III.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기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장학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및 2001년 10월 20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동 부칙 제 2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2004년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1조 내용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함이 옳다고 보며

- 안 제9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개정내용 중 제1호 내지 제3호 내용은 해당 결격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호 조문 내용은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참고로 동 조례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제6조(장학생의 정원) 규정과 관련하여,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최근 장학금 지급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지 원 대 상		2004년 지급액		2005년 지급액	
구 분	인 원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1,016	51	37,740	53	40,545
지도자	349	15	11,100	16	12,240
부녀회	365	19	14,060	20	15,300
문 고	302	17	12,580	17	13,005

※ 학생 1인당 지원액 : 2004년 740,000원 / 2005년 765,000원

IV. 관계법령

○ 教育基本法

第8條 (義務教育) ①義務教育은 6年の 初等教育 및 3年の 中等教育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부칙 <제17390호, 2001.10.20>

제2조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

①제2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시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第39條 (義務教育經費 등) ①義務教育에 종사하는 敎員의 報酬와 기타 義務教育에 관련되는 經費는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부담한다. 다만,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04.12.31]

○ 상훈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 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9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9. 새마을훈장

제17조의2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9조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9. 새마을포장

제26조의2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